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7
----------	-----

제출년월일 : 1994. 5.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현행 조례 제2조의 과세면제 조문중 일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정리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정부의 주택정책에 부합되도록 운영하기 위한 것임

□ 주요골자

- 제2조 ①항의 내용중
 - 중복된 조문을 간결히 정리하고
- 제2조 ①항 1호의 과세면제 대상사업 시행자의 과세면제 대상을
 - 당해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로 한정 하였으며
- 제2조 ①항 2호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개선사업지구내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와
 - 주택 건설촉진법에서 정한 국민주택 규모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9조

□ 기타 참고자료 (별첨)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과세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주민을 포함한다)가 당해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2.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현지 개량사업지구내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서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 재산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과세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유효기간) 이조례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